

보행환경 저해요인 안전감찰 결과 보고

요 약

□ 감찰개요

- 감찰기간: 2021. 9. 6.(월) ~ 9. 16.(목) ▷ 11일간
- 감찰대상: 관내 공사현장 주변 및 각종 시설물 등
- 감찰방법: 현장 감찰(관련서류 검토 병행)
- 감찰반: 청렴감사팀장 외 4명

□ 감찰결과

- 행정상 조치: 현지처분10건(시정)
- 신분·재정상 조치: 해당없음

□ 조치계획 ▶ 해당부서

- 지적사항 즉시 정비 및 조치



기획감사실

보행환경 저해요인 안전감찰 결과 보고

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주요도로의 각종 안전·안내시설물 등에 대한 보행환경 저해요인 안전감찰 결과 보고임.

- 추진근거 : 2021년도 감사·감찰계획(기획감사실-1281(2021.1.27.)호) -

I 안전감찰 개요

- 기 간: 2021. 9. 6.(월) ~ 9. 16.(목) [11일간]
- 대 상: 관내 공사현장 주변 및 각종 시설물(교통, 도로표지, 보도 등)
- 감찰반: 청렴감사팀장 외 4명
- 감찰사항
 - ▷ 보행 안전 관련(보도상태, 맨홀, 안전휀스, 공사현장 주변 등) 시설물
 - ▷ 도로점용 관련(가로등, 통신, 전주, 벤치, 적치물 등) 시설물
 - ▷ 각종 안내(장애인시설, 도로표지, 교통안전시설물 등) 시설물 등
- 감찰결과
 - ▷ 행정상 조치: 현지처분 10건 (시정)
 - ▷ 신분·재정상 조치: 해당사항 없음

II 안전감찰 결과

1 총평

- 보행불편사항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관내 공사현장 주변 및 주요도로 시설물 등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,
-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관리시설물이 관내 산재하여 있음에도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나, 파손 등 일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 및 보행환경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(개선)가 필요
 - ▷ 보도블록, 맨홀 뚜껑 등 파손된 시설물, 도로굴착 복구공사 미조치

2 지적사항

연번	위치	지적사항	관리부서	비고
1	함박봉로 0 일원	· 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	도시관리과	
2	만덕대로 0 일원	· 보도블록 탈락 및 침하		
3	시랑로 0 일원	· 보도블록 탈락		
4	팽나무로 00 일원	· 맨홀 주변 침하 및 맨홀뚜껑 미고정(소음)		
5	덕천로000번길 0 일원	·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	건설과	
6	팽나무로 00-0 일원	· 도로굴착지 복구 미조치		
7	시랑로 0 일원	· 시선유도봉 파손	교통행정과	
8	시랑로00번길 000 일원	· 교통표지판 파손		
9	시랑로00번길 000 일원	· 교통표지판 탈락(낙하) 위험		
10	만덕대로 000 일원	· 가로수 보호판 탈락	공원녹지과	

III 주요 지적사례

1 횡단보도 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

- (기준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0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)제1항 별표1에 따라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,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실태) 함박봉로 000 일원 횡단보도 진입부분 점자블록 미설치로 시각 장애인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
- (조치사항)
 - 관련 규정에 따라 횡단보도 진입부분 점자블록 설치



함박봉로 000 일원

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

②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

- (기준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)」 등에 따라 안전시설물(안전휀스, 라바콘 등)설치, 안전점검, 현장정리 등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(실태) 만덕동 00아파트 일원 침수예방공사 현장정리 미조치 및 안전시설 미설치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
- (조치사항)
 - 공사현장 정리 및 안전시설 설치



덕천로000번길 0 일원

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

③ 도로굴착지 복구 미조치

- (기준) 「부산광역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 규정」 및 도로굴착 허가 조건에 따라 도로굴착공사 완료 후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, 도로시설물 또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- (실태) 팽나무로 00-0 일원 도로굴착공사 시행 후 도로시설물(과속방지턱) 원상복구 미조치
- (조치사항)
 - 도로시설물 원상복구 시행



팽나무로 00-0 일원

도로굴착지 복구 미조치

IV 조치계획

- 감찰 결과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므로 현지(시정)조치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유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현장 확인 및 정비 요청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(증빙자료 포함)

붙임 세부지적사항 1부. 끝.